

## 통합·폐지 모집단위 소속 교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 「학사조직 개편 및 학생정원조정규정」 제9조 내지 제10조의 통합 또는 폐지되는 모집단위 소속의 전임교원(외국인교원은 제외하며, 이하 “교원”이 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13.)

**제2조(소속 변경 원칙)** 통합 또는 폐지가 결정된 모집단위 소속 교원의 소속 변경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이 동일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소속 변경
2. 교양과목의 수업이 가능한 경우 학부교양대학으로 소속 변경
3. 전공전환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전공과 일치하는 모집단위로 소속 변경

**제3조(소속 변경 절차)** 통합 또는 폐지가 결정된 모집단위 소속 교원의 소속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

1. 모집단위의 통합 또는 폐지가 결정되면 기획처장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교무처장은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모집단위의 소속 교원에게 모집단위의 통합 또는 폐지 사실과 소속 변경 신청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모집단위의 통합 또는 폐지를 통보받은 교원은 모집단위의 통합 또는 폐지 결정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소속 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무처장은 통합 또는 폐지가 결정된 모집단위 소속 교원의 소속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원소속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소속 변경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소속 변경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교원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정한 소속 변경 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교무처장은 수정된 소속 변경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원소속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소속 변경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소속 변경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선정일로부터 부터 4년 이내에 소속 변경 신청서에 기재한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학위를 수료 또는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변경 희망 모집단위의 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교양과목의 수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공전환을 위한 교육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6. 총장은 제5호의 조건을 충족한 교원에 대해서는 소속 변경 희망 모집단위로 소속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교원소속변경심의위원회)** ① 통합 또는 폐지되는 모집단위 소속 교원의 소속 변경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교원소속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소속 변경 희망 모집단위가 속한 단과대학 학장으

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3명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1.6.1.)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전공전환을 위한 교육 지원)** ① 통합 또는 폐지가 결정된 모집단위 소속 교원은 「교원연구년제규정」 제3조 내지 제4조, 제13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공전환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연구년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해당 교원을 우선적으로 연구년제 교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전공전환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및 금액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소속 모집단위 내에 시수가 부족하게 되거나 소속 모집단위의 통·폐합이 예상되어 전공전환을 하고자 교육을 희망하는 교원에게도 제2항에 준하는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속 변경 대상자 선정 취소)** 소속 변경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소속 변경 신청서상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변경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취소한다.

**제7조(소속 변경 탈락자 처리)** 기한 내 소속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소속 변경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아니한 교원 또는 기간 내 전공전환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정한 과원으로 본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0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6.1.)

## 소속 변경 신청서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인)

신청 내용

소속 변경 희망 모집단위명	
전공전환을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목표 전공 및 학위, 세부일정 등)	
년 월 일	
교무처장 귀하	

※ 전공이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교양과목의 수업이 가능한 경우, 관련내용 기술 및 근거 자료 제출